



# 기 관 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

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20 년 월 일 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을 알려 드립니다.

납 세 자	상 호	사업자등록번호
	사업장	
과세유형 전환 사유		

**▲ 간이과세자 :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,800만원 미만으로 영수증만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**(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)

- 유형전환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○월 ○일 등기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, 현재 사용 중인 사업자등록증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 하에 **자진 폐기**하시기 바랍니다.(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,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)
-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**간이과세자**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○○년 ○월 ○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○○년 ○기 일반과세자 확정신고('00. 0. 0~'00. 0. 00.)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합니다.(납부는 ○○년 ○기 확정신고('00. 0. 0~'00. 0. 00.) 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)  
※ 신고서식 - 「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」
-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**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원하는 사업자와는 거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 
일반과세자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○○년 ○월 ○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**간이과세포기신고서**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○○년 ○월 ○일부터 3년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, 3년 경과 후 간이를 적용받으려면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해야 합니다.

- 붙임 : 1.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1부.  
2. 간이과세포기신고서 1부. 끝.

기 관 장 직인

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

◆ 담당자 : ○○세무서 ○○○과 ○○○조사관(전화 : , 전송 : )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 )

전송( 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